



# 정부, 해운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 적극 추진

## 일류 해운산업 육성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는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국과의 물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고객지향적인 항만물류 서비스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2월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중국 상하이 양산항 개장과 관련 동북아 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국가별 주요 항만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산·광양항이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일류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 공급 지원 등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광양항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 신항 3선석을 내년 1월 조기 개장을 통해 중국 양산항 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만 물류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 환적화물(T/S) 및 다국적 물류기업을 국내에 적극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하반기 중 한·중·일 국제물류 장관회의를 개최, 3국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모델

을 모색함으로써 주변국과의 물류협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객지향적인 항만 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을 위해 항만노무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관리 중심의 항만관리체제도 항만공사화 또는 지자체에 이관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유비쿼터스 항만(U-Port)' 구축을 위한 첨단 시스템을 내년부터 적극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구인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이 내년 8월까지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해운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면, 시중의 부동산자금을 선박펀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된다. 우선 선박펀드 만료시 선가차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수익보전형 상품이 개발되며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선박펀드 투자자들은 오는 2008년까지 3억원이하 비과세, 3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다.

또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컨테이너세가 폐지되고 현재 7명으로 제한된 외국선원 고용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선원 고용범위를 선장과 기관장, 주요 해기사를 제외한 모든 선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항횟수가 늘어나는 선사에 대해서는 입·출항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올해말까지 톤세제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선박 요건과 정부 확인절차 등 세부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선박의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항운노조원을 회사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

태로 체제가 전환된다. 정부는 우선 부산과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항만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만에 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도입,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및 수송화물과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항만인력공급체제지원특별법 12월23일 공포

해양부, 개편위원회 구성 하위법 제정 추진

지난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인력공급체제지원특별법(법률7759호)이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상용화지원특별법은 부칙 제1조에 의거 3월24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해양부는 상용화 협상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상용화 소요재원을 합의하고 협상일정 등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운노조 파업에 대비해 항만비상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고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상용화법 부칙 3조에 우선 상용화 도입이 규정돼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 항운노조는 상용화 협상을 대비해 작업환경과 작업형태, 투입인원 등 자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에서 해양부와의 협상에 나설지 아니면 협상자체를 거부할지 명확한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용화 협상에 나선다는 가정하에 외부용역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효율적인 상용화 추진을 위해 항운노조 3인, 사용자 3인, 정부 2인, 공공단체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는 '개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상용화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

둘째, 상용화 되는 항운노조원의 정년, 임금 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체제 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하게 되어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